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34
----------	-------

발의연월일 : 2023. 12. 4.

발 의 자 : 권명호 · 강기윤 · 구자근
김용판 · 김희국 · 박대수
배준영 · 안병길 · 이태규
지성호 · 최영희 · 최춘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양부모가 양육보조금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양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양육보조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양육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양육보조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양육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2(양육보조금의 환수) ①</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u> <u>「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u> <u>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u> <u>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u> <u>정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u> <u>따라 지급한 양육보조금을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환수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을</u> <u>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u> <u>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u> <u>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u> <u>·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u> <u>률」에 따라 징수한다.</u>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법률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법률
<u><신 설></u>	<u>제32조의2(양육보조금의 환수) ①</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u> <u>「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u> <u>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u> <u>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u> <u>정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u>

따라 지급한 양육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